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4조제2호, 제20조, 제25조제1항)
- 환경계획으로 명칭 변경(안 제10조, 제13조제2항)
- 환경계획 수립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(안 제10조제1항)
-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(안 제10조제2항 신설)
- 환경계획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사안 고려하도록 규정(안 제10조제3항 신설)
- 환경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탄소중립 시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

25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등 상위 법령의 정책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계획 및 제반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2) 주요 내용

-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4조제2호, 제20조, 제25조제1항)
 - 안 제20조 : 「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」의 명칭 변경으로 「환경분쟁 조정법」으로 변경함
 - 안 제25조제1항 : 환경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제2항을 인용함
- 환경계획으로 명칭 변경(안 제10조, 제13조제2항)
- 환경계획 수립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(안 제10조제1항)
 -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의 종합계획 규정을 인용하여 기간을 변경함
-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(안 제10조제2항 신설)
- 환경계획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사안을 고려하도록 규정(안 제10조제3항 신설)
- 환경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탄소중립 시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25조제1항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정책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일부 개정 조항에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향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